

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95,081,160	14,852,435
일반회계	476,759,165	14,302,775
특별회계	18,321,995	549,660
기타특별회계	18,321,995	549,66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425,190	102,756
주택사업특별회계	24,302	729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95,393	2,862
의료급여특별회계	1,223,960	36,719
자활기금특별회계	1,691,766	50,753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3,250,628	97,519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	455,689	13,67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300	99
농어민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	5,933,980	178,019
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40,000	1,200
장흥군수질개선특별회계	2,177,787	65,33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3,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금(세), 재정보전금, 특정목적기부금 및 포상금은 예산 승인 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